

[정관 개정 비교표]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</p> <p>2.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</p> <p>3. 부동산 및 증권 펀드의 운용</p> <p>4.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업무</p> <p>5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</p>	<p>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</p> <p>2.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</p> <p>3.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</p> <p>4.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</p> <p>5. 부동산 및 증권 펀드의 운용</p> <p>6.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업무</p> <p>7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</p>	